

서울특별시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47
----------	------

2017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17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17년 10월 24일
- 라. 상정일 : 제27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1) 제안이유

- 가.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우리 시가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 나. 수탁기관의 의무불이행으로 위수탁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현재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함.
- 다. 수련관 운영방식에는 시 직접운영, 민간위탁, 자치구 위임 운영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로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및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부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이 대폭 증대하였으며,
- 특히, 구로구는 최근 다문화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다양한 청소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임.
- 이에 청소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로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이 소수에 불과하고, 지역 내 전문 민간단체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직영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은 규모 및 필요 인력 등에 비추어 직영으로 전환시 인력충원, 조직개편,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과 재정부담 증가의 우려가 있음.

- 또한, 과거 '07~'13년 6년간 5개 수련관(문래, 강북, 금천, 마포, 화곡)을 자치구에 위임 운영한 바 있으나 '12년 시의회에서 전문성 부족, 비효율적 운영 등을 지적하여 사무위임을 해지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중도입국, 저소득층 등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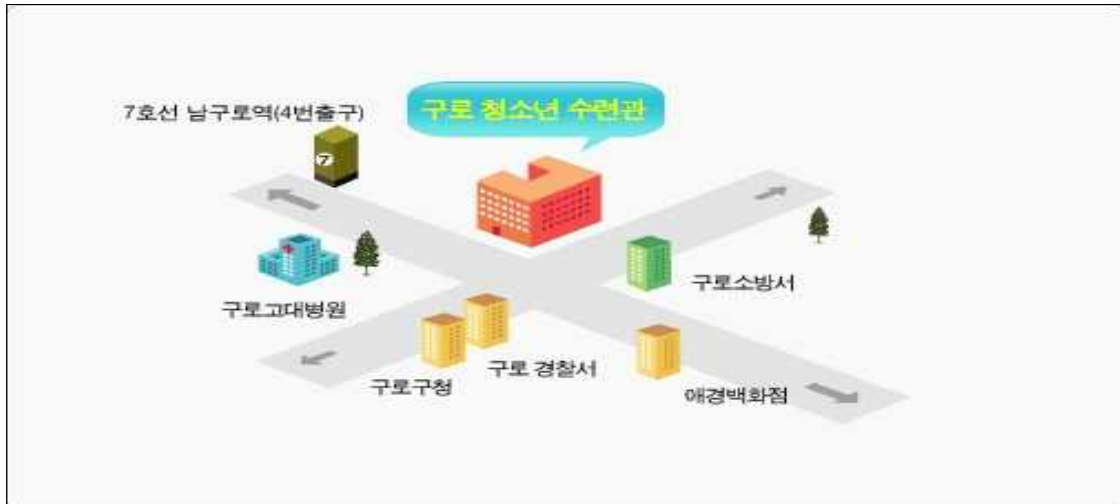
다.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 개관일자 : 2002. 6. 1.
- 시설규모 : 연면적 4,986m²(지상 4층, 지하 2층)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휴카페,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018년 2월 ~ 2021년 2월)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16백만원('17년)
- 산출근거
 - 인건비 565백만원, 물건비 675백만원, 경상이전 115백만원, 자본지출 642백만원, 사업비 750백만원, 사업외 지출 224백만원, 예비비 등 4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재위탁(공모)으로 해당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
위탁 사무내용)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동의안은 제276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이하 ‘당초동의안’, 의안번호 2023, 의안명 : 서울특별시 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 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의 수탁기관인 (사)청소년교화연합의 의무불이행으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 구로청소년 수련관 현황 >

- 시설명 :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 시설규모 : 연면적 4,986m² (지상 4층, 지하 2층)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휴카페, 프로그램실 등
- 개관일자 : 2002. 6. 1.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탁기간 : 3년 (2018. 2. ~ 2021. 2.)
- 위탁업무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활동사업, 상담사업, 대안교육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소요예산 : 3,016백만원('17년 예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¹⁾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특히,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수련, 교류, 문화²⁾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본 동의안과 당초동의안과 다른 점은 위탁기간((2017.10.16.~2020.10.15.) → (2018.2.~2021.2.))과 소요예산(2,690,491천원→3,016백만원)으로, 소요예산의 변경은 수영장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행정목적 달성방법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운용 또는 청소년활동 시설 운영에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서는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민간위탁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이 입지한 지역은 서울의 서남권으로, 다문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저소득층이 비교적 많이 분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요구되고 있는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 제공, 운용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시설관리, 인사, 보수, 회계 등에도 민간 위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구로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내역 >

- 1차 : 2002. 6. 1.~2005. 5.31. (3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2차 : 2005. 6. 1.~2008. 5.31. (3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3차 : 2008. 6. 1.~2011. 6.30. (3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단법인 청소년교회연합회 컨소시엄)
- 4차 : 2011. 7. 1.~2013. 6.30. (2년, 사단법인 청소년교회연합회)
- 5차 : 2013. 7. 1.~2016. 6.30. (3년, 사단법인 청소년교회연합회)
- 6차 : 2016. 7. 1.~2018. 6.30. (2년, 사단법인 청소년교회연합회)

- 평생교육국이 본 민간위탁동의안을 재차 제출한 이유는
 첫째, 직영시 인력충원, 조직개편,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둘째, 전문성부족 및 비효율적 운영(2017~2013년 자치구 사무위임 후 해지사례)이 우려되고,
 셋째, 본 동의안이 시의회 동의를 못 얻을 시 현수탁법인((사)청소년교화연합회)이
 2018년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 대안 수립시까지 일시 폐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으로 설명하고 있음.

-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은 2008년부터 (사)청소년교화연합회에서 재위탁·
 재계약을 통해 9년째 운영해 왔으나,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의 조사로
 횡령사실이 밝혀진바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수탁법인에게 인사조치를 요청 후
 비상체제(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로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교화연합회 현황 >

- 단 체 명 : (사) 청소년교화연합회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120 내인빌딩 802
- 목 적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이상 실현, 불교가 추
 구하는 진리와 자비의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건설한 가치관 확립
- 주요활동 : 청소년의 연수·연구·수련·윤리회복·약물남용예방, 바른생활다짐대
 회, 유해환경추방, 자원봉사, 청소년문화지킴, 국제교류, 사회복지 등

<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비위 관련 조사경위 및 결과 >

- 조사경위 및 결과
- 2017.6.15. 구로수련관 비위사실 市 조사담당관에 공익 제보(익명)
- 2017.6.21. 조사실시 : 구로수련관 운영실태 조사(조사담당관)
- 2017.9.06. 수사의뢰 : 市 조사담당관 → 관할 경찰서
- 2017.9.22. 환수요청 : 202,950천원(청소년정책과→교화연합회(위탁법인))
 - 관련자 조치(관장, 운영부장, 업무지원팀장, 생활체육팀장) 해임(7.12)
 - 위탁법인(교화연합회) 위탁계약 해지 통보

- 평생교육국의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지문인식기 설치(청소년수련관 및 유스호스텔), 청소년시설 수시 점검 강화, 교육 강화, 정원 2명의 '평가전담팀' 신설로 요약될 수 있으나, 이러한 대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정시간이 경과 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재발방지 대책 >

-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근본적 비위 차단
 - 부정한 인건비 지급 차단을 위한 시설별 출퇴근 지문인식기 전면 도입
 - 현금 납부 이용료의 횡령 예방을 위한 회원관리시스템 사용 철저
 - 청소년시설별 내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위·수탁협약서에 청소년시설 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장 규정 삽입
 - 시설 종사자에게 부패·공익제보 활용 적극 안내 등
- 청소년시설 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 강화 및 특별교육 실시
 - 청소년시설에 대한 수시 교차 점검
- 시립청소년시설 비리근절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정례화
 - 대 상 : 시립청소년시설 시설장 등
 - 교육내용 : 청렴실천 의지 제고 및 부패 근절 교육실시
 - ▶ 최근 발생한 청소년시설 회계부정 사고에 대한 조치결과
 - ▶ 청렴교육, 직업윤리 등 복무관련 사항 등
- 상시 지도·점검을 위한 '평가 전담팀' 신설
 - 설치방안 : 정원 2명(5급 1, 6급 1) 증원 및 청소년정책과 업무조정으로 인력확보
 - 평가팀 구성 : 4명(5급 1, 6~7급 3)
 - 주요기능 : 청소년시설에 대한 현장관리·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전담

- 또한, 평생교육국이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였다는 것은 그 동안 청소년시설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관리·감독의 체계가 허술했었다는 것 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 비위사건의 책임이 평생교육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겠음.

- 과거 민간위탁 청소년시설에서 본 사건과 유사한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현재도 청소년시설에서 크고 작은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소홀, 태만 등에 대한 평생교육국 내부적 조치는 보고된 바 없으며,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비리관련 조치내역 및 재발방지대책]에도 누락되어 있음.

※ 과거 청소년시설 비리

- 2015년 서울유스호스텔 : 허위취직 4명 임금을 횡령하여 법인전입금으로 총당
- 2006년 문래청소년수련관 : 보조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횡령 및 법인에게 전달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관리·감독 등 ‘권한’만 있고, ‘본 사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더라도, 재발방지대책만 마련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업무태도가 관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규명과 함께,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의 정상적인 운영 및 평생교육국의 기능정상화를 위하여 평생교육국장 및 담당공무원들은 본 사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47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우리 시가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 나. 위탁기관의 의무불이행으로 위수탁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현재 위탁기관과의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함
- 다. 수련관 운영방식에는 시 직접운영, 민간위탁, 자치구 위임 운영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로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및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부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이 대폭 증대하였으며,
- 특히, 구로구는 최근 다문화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다양한 청소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임
- 이에 청소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로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이 소수에 불과하고, 지역 내 전문 민간단체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직영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은 규모 및 필요 인력 등에 비추어 직영으로 전환시 인력충원, 조직개편,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과 재정부담 증가의 우려가 있음

- 또한, 과거 '07~'13년 6년간 5개 수련관(문래, 강북, 금천, 마포, 화곡)을 자치구에 위임 운영한 바 있으나 '12년 시의회에서 전문성 부족, 비효율적 운영 등을 지적하여 사무위임을 해지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중도입국, 저소득층 등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 개관일자 : 2002. 6. 1.
- 시설규모 : 연면적 4,986m²(지상 4층, 지하 2층)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휴카페,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018년 2월 ~ 2021년 2월)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16백만원('17년)

- 산출근거

- 인건비 565백만원, 물건비 675백만원, 경상이전 115백만원, 자본지출 642백만원, 사업비 750백만원, 사업외 지출 224백만원, 예비비 등 45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재위탁(공모)으로 해당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진영 (☎2133-4121)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 민간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사업내용 :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위 치 :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1
- 시설규모 : 연면적 4,986㎡(지상4층, 지하2층)
- 주요사업 : 청소년 문화·체육·인성 등 수련활동,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특성화사업 등
- '17년예산 : 3,016백만원

○ 위탁 추진경과

- '02.06. ~ '05.05. : 1차(3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05.06. ~ '08.05. : 2차(3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08.06. ~ '11.06. : 3차(3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외 1
 - '11.07. ~ '13.06. : 4차(2년),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
 - '13.07. ~ '16.06. : 5차(3년),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
 - '16.07. ~ '18.06. : 6차(2년),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
- ※ '18. 2월 중 협약 해지 예정

□ 성과평가 개요

- 수행기관 : (주)한국정보경영평가
- 평가기간 : 2016. 2 ~ 3월
- 대상기관 : 구로수련관 등 16개 시립청소년시설
- 평가방법 : 평가단(전문 평가위원 3인 내외 구성) 현장평가

□ 시립구로수련관 평가결과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구로구 구로동로 141	시 설 장	공 재 만
운 영 법 인 (법 인 대 표)	(사)청소년교화연합회 (박재근)	개 관 일	2002.09.01
위 탁 기 간	'13.07.01~'16.6.30	종 사 자 수	16명

○ 총 평

- '02.09.01 개관한 구로청소년수련관은 '전통 한지 체험관 및 공예 체험관' 운영 등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1부 5팀 16명(관장 1, 팀장 4, 팀원 11)으로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 이용률은 68.3%('13) → 61.9%('14) → 62.5%('15)이고, 서울시 및 교육청, 구로구, 여성가족부 등이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참가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 학교 및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사업을 개발·진행하고 있음

○ 평가 점수

사업성과 (30)	재정운용 (20)	조직운영 (15)	사회기여 (10)	시민만족 (15)	시설관리 (10)	합계 (100)
28	13	5.5	10	8	10	74.5

○ 위탁사무 사업성과

평가 항목	평점	평가 내용
사업 목표의 구체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고, 운영방침과 세부계획에서 프로그램별 사업대상, 참여목표 인원수, 프로그램 회차 등이 명시되어 있음 사업목표는 분야별, 사업별, 프로그램별 목표가 나누어져 있고, 상위목표와 하위목표를 제시하였고 사업목표와 연계하여 평가방법,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등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남 '13년 "아름다운 세상 소통, 나눔, 기쁨" 등 5개 프로그램 신설, '14년 "리더십함양 리더의 조건" 등 6개 프로그램 신설, '15년 "생활공예 구래?" 등 6개 프로그램 신설 최근 지역적 특성상 원거주민의 이탈이 많고,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 "나비", "통조림"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중임
사업추진 및 성과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평가는 상반기 평가, 하반기 평가, 분기별 평가를 추진하였고, 연말 전체 평가를 진행하여 보고함 예산승인 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이행함 연초 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함 청소년의 시설이용률은 '14년 61.9%에서 '15년 62.5%로 다소 증가함
청소년 이용 비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이용률 : '13년 68.3%, '14년 61.9%, '15년 62.5% 3개년 평균 64.2%로 나타남
청소년 프로그램 비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프로그램의 비율 : '14년 77.5%, '15년 78.4% 2개년 평균 78.0%로 나타남
프로그램 운영실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 시간대 프로그램은 '13년 "중등수학" 등 13개 프로그램, '14년 "사랑의 교실" 등 13개 프로그램, '15년 "팔리테스" 등 16개 운영함 공휴일 프로그램은 '13년 "일요 창의 체험" 등 5개 프로그램, '14년 "바다들산 캠프" 등 2개 프로그램, '15년 "주말한지체험" 1개 운영함 구로구, 지역 학교 등 약 20여개 학교 및 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종합사업결과보고서 상 세부사업별 해당년도 전체 평가 및 문제점과 차기년도 개선 방안 계획을 상세히 기술함
홍보사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별, 사업별 운영계획안에 홍보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홍보운영계획은 홍보사업의 목적, 운영방향, 홍보내용, 홍보마케팅의 근거, 홍보자료 제작, 운영관리 계획(업무분장, 업무추진일정), 기대효과, 소요예산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음 홍보모니터링에 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홍보 모니터링에 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서 환류 정보를 알수 없음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안내 공문발송, 지역기관 협의회 참석을 통한 홍보진행, 수련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물 게시 등 홍보계획서의 추진계획 이행함

○ 재정운용 효율성

평가 항목	평점	평가 내용
예산 계획 및 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함 • 예산 편성 시 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함
보조금 관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총 사업비의 10% 금액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법인전입금에서 이행보증보험료가 납부됨 • 분기별 사업비 정산 및 결산서 작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 예산집행 후 5일 이내 보조금 통합회계 관리시스템에 등록함 • 그 외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함
회계 관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직원 관련규정을 준수함 • '13년~'15년 관장 포함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함 • 법인전입금은 '14년부터 매년 20백만원씩 납입하였으나 별도 정산서류는 없음 • 그 외 수입금 및 지출금 관련 규정을 준수함
계약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소극장 개보수공사 120백만원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이행보증서를 징수했어야 하나 지급각서로 대체함 • 과도한 입찰참가제한을 하지않고 적정하게 이행함 • 수의계약사유서 미포함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외벽드라이비트 공사, '14년 수련관 화재복구관련 공사 2건, 수련관 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 및 보수공사,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수처리 시설,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cctv설치 • 계약 및 준공관련 일체 서류 미비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수련관 난방관련공사, '14년 기계실 계단마감재 및 논슬립 교체, 수련관 화재복구관련 공사 2건,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수처리시설,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cctv설치
재산 및 물품 관리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15년 정기재물조사를 미 실시하여 재물조사표가 미부착되어 있음 •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미 실시 • 특화사업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노트북, 책상 등)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해당 보조금 지급 기관(구청 또는 교육청 등)에 반납하지 않고 수련관에서 사용 중 • '14년 3월 에어컨 2대를 설치하면서 물품검사를 이행하지 않음 • 소모품대장, 비품대장, 사무용품의 관리가 불량하고, 차량을 1대(스타렉스) 보유하고 있으나 차량운행일지가 없음

○ 조직운영 효율성

평가 항목	평점	평가 내용
조직 운영규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적절하게 준수함 • 복무, 회계, 문서, 급여 등에 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나, 2004년에 최종 개정되어 추가 개정 및 수정이 필요함 • 기구인력 운용계획에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직도와 업무분장만 있음
문서관리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의 보관상태는 양호하나 각종 대장관리는 잘 안됨 • 사무인계인수는 내부결재를 하지 않고 약식문서로 대체함 • 별도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고, 시설운영규정 내 문서관리규정으로 대체함
종사자 채용관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함 • 성범죄 경력조회 기간(채용 후 15일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오해연, 김재순, '14년 김신지, 서현아, 이동곤, '15년 배기정 • 공개채용의 공고기간(15일)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오해연(11일), '14년 김신지(8일), 서현아(5일), '15년 배기정(7일)
인력 운영관리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종사자는 16명(관장 1, 팀장 4, 팀원 11)으로 1부 5팀제로 운영함 • 정규직 15명, 계약직 1명으로 정규직 종사자 비율 25%이상(94%)을 준수함 • '13-'15년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공개채용 시 개별연락을 통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범인소속 직원을 포함한 수련관 내부직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함 •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기교육은 별도 실시하지 않음 • 청소년 지도사는 8명으로 법정기준 6명을 초과하였으나 1급 청소년 지도사는 없음(법정기준 : 1급 청소년 지도사 1명)
복무 및 급여관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장 포함 종사자는 상근하고 있으며, 출퇴근 기록기를 이용하여 근무 상황 및 연장근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음 • 종사자의 기본급을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의 봉급기준표를 준수하지 않고, 2~3년 전의 지침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원급 종사자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월별로 퇴직금을 적립함

○ 사회적 가치 기여도

평가 항목	평점	평가내용
정보공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연 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예산 및 결산에 대해 매년 서울시에 보고하고 자체홈페이지에 게재함
자원봉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15년 '씨밀레', '해피바이러스 Y', '하모니' 등과 같은 자원봉사단이 활동하였고, 자원봉사대축제 "Happy Vol's Day" 개최
청소년 인권 보장실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15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교육 등 인권교육을 실시함 놀토야 놀자, 놀토체험버스 시범사업 등 놀토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
청소년 참여위원회 행사 참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수련관 모니터링 및 "효" 캠페인, 휴카페 인테리어 회의, 놀토엑스포 진행, 진로 토크콘서트 등 각종 행사를 주도하여 운영함

○ 시민 만족도

평가 항목	평점	평가내용
민원관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홈페이지의 민원상담창구를 통해 민원발생에 대해 조치하고 있으나 '14년 5월 이후 응대가 되지 않고, 오프라인 민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함
평가 지적사항 개선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8개 평가지적사항 중 공개채용 절차 부적정 1건 미이행

○ 시설관리 적정성

평가 항목	평점	평가내용
안전관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년3회, '15년3회 안전교육 실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등록증권, 영조물손해배상 증권(대인, 대물), 기본보상상해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함 매년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자위소방대 조직표,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음
비상대책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년 1회, '15년 1회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한전영등포, 고대병원 응급센터, 서울시종합상황실, 구로소방서 등 총 10개의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안전점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재난안전관리대처본부가 편성되어 있으며, 가스누설, 전기 및 화재 사고 등의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 요령이 수립되어 있음 시설 환경 및 위생점검을 1주일마다 실시하고, 매년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함

□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

○ **구로수련관 수탁기관 공모 선정 추진**

-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고,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민간위탁 추진

○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방안 모색**

- 성과평가 결과 환류 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모색 및 실행